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3. 12.

서울특별시의회
우형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서울시 내 각 학교별

외부 현장교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

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, 수련활동 등

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

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

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,

□ 이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

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위한

안전교육, 안전대책 등의 점검을 위한

안전계획 및 사전답사 등의 조항 마련을 통해

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

발의되었습니다.

- 먼저, 제명의 경우, 기존 ‘현장체험학습 지원’에서 ‘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’을 통해 학생안전에 기반한 체험학습을 도모하고자 제명을 수정하였으며,

-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을 통해 ‘온라인 및 현장답사’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전, 사전점검하는 ‘사전답사’와 학교 밖 현장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 실시 교육인 ‘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6조 경우, 학교장의 ‘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’을 신설하여, 안전대책, 안전교육 등의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8조의 경우,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학교장의 ‘사전답사’ 실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안 제9조의 경우, 제목을 기존
‘안전교육’에서 ‘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’으로
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경우,
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의 의무를 추가하여
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
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